##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19. 10. 10 규칙 제 978호 일부개정 2023. 12. 20 규칙 제1125호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시행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시설의 사용신청) 「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용인시 평생학습관(이하 "평생학습관"이라 한다) 시설 일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인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용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3조(수강생의 관리) 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 공개로 모집하여야 한다. 다만, 정원이 미달 되거나 심화반 등을 운영하고 자 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심화반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, 서류전형, 면접 또는 초급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을 우선하여 모집할 수 있다.
  -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교육 수강생이 수강 이력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 이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.
- 제4조(강사의 관리)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 강사로 선발된 사람은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교육 강사가 강의실적 증명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강의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- 제5조(수강료의 징수)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개강 후에 수강 신청하는 수강생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수 강료를 차감할 수 있다. 다만, 개강 후 7일 이내에 수강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료 차감을 제외한다.

수강료 = (수강 신청일 포함 잔여 교육일수 / 전체 교육일수) × 총 수강료

- 제6조(수강료의 감면 신청) 조례 제9조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료 감면신청서
  - 2. 그 밖에 교육수강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제7조(수강료의 반환)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이미 납부된 수강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〈개정 2023. 12. 20〉
  - 1. 전액반환
    - 가. 천재지변, 불가항력 및 평생학습관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이 취소 또 는 정지된 경우
    - 나. 해당 교육의 개강 전까지 수강 포기를 신청한 경우
  - 2. 일부반환
    - 가. 수강생이 개강일 이후 수강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 에 따라 반환할 것

반환금액 = 기 납부액 - {(수강 포기일 포함 교육진행 일수 / 총 교육일수) × 수강료}

-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진행 일수가 총 교육일수의 70퍼센트가 초과된 후에 수강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제8조(교육과정 위수탁)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교육과정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과정 위수탁 신청서를 작성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교육과정 위수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서 내용을 공정하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수탁기관을 결정하여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자는 시장과 교육과정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제9조(퇴관조치) 시장은 교육과정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. 〈개정 2023, 12, 20〉
  - 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을 받은 경우

- 2. 타인의 안전 또는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- 3.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
- 4.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

#### 부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다른 규칙의 폐지) 「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은 폐지 한다.
- 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「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- 별표 9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의 사무분장란 중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중 "여성회관"을 각각 "평생학습관"으로 한다.
  - ② 「용인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- 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여성회관"을 "평생학습관"으로 하고,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, 가목 및 사목 중 "여성회관"을 각각 "평생학습관"으로 한다.
- 제4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「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 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부칙〈2023. 12. 20 규칙 제1125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「별지 제1호서식〕

<앞 면>

# 용인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신청서

신 청 자	개인	성명 (생년월일)				전화 번호			휴대폰 번호	
		주소 (도로명)						이메일		
	r) =1)	단체명 (대표자)				전화 번호			FAX	
	단체	주소 (도로명)						이메일		
사용	-시설									
사용	-일시	년 년	월 월	일( 일(	요일 요일		시 시	분부터 분까지(	주 회,	총 회)
사용	무적									
	+인원 ]별)				( L	총 참 명	명 / 여	명)		
기 참고	타 1사항									

「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」 제6조 및 「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: (인 또는 서명)

### 용인시장 귀하

※ <뒷 면>의 【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】를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## 【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】

#### □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	용인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에 따른 수집·이용
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	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휴대폰 번호,
항목	주소, 이메일, 소속(단체명), FAX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	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
동의 거부 권리 및	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
동의 거부에 따른 이익	있으며, 위 항목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시설 사용
내용 또는 제한사항	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※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「개인정보보호법」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: (인)

용인시장 귀하

### [별지 제2호서식]

# 수강 이력 확인서

#### □ 수강자 인적사항

성 명	생년월일		성별	
주 소		전화번호		

### □ 수강 이력 사항

과정명	수강기간	수강시간	수료여부	비고

위와 같이 수강 이력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용 인 시 장

### [별지 제3호서식]

# 강의실적 증명서

	강사	인적	사항
--	----	----	----

성 명	생년월일		성별	
주 소		전화번호		

#### □ 강의 실적

강의 담당과목	강의기간	요일/시간	비고

□ 용도 :

위와 같이 강의실적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용 인 시 장

### [별지 제4호서식]

	교육수강료 감면신청서							
교-	육 과목(반)명							
	주 소							
신	성 명	생년월일 성별						
청 인	(대표자명)	핸드폰/FAX						
	단 체 명							
	교육 수강료							
내	감면 신청액							
용	감면사유							
	그 밖의 사항							
	위와 같이 용인	시 평생학습관 교육수강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.						
		년 월 일						
신 청 인 (인								
용	용 인 시 장귀하							
*	※ 구비서류 : 교육수강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							

### [별지 제5호서식]

	교육과정 위수탁 신청서							
	단 체 명		법인(사업자) 등 록 번 호					
신 청 인	주 소		(전화	번호 :		)		
	성명		생 년 월 일		성별			
	(대표자명)		핸드폰/FAX					
	대표자 주소							
	과 정 명							
교육과정	사 용 장 소							
	교육 주요내용							
	위 탁 기 간							
위탁기간	교육대상인원							
및	수 강 료	기본 :						
교육대상	1 ,0 11	교재 및 재료비 :						
	그 밖의 사항							
위와 길	위와 같이 용인시 평생학습관 교육과정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신청합니다.							
년 월 일 붙임: 1. 교육운영계획서 2. 정관(법인) 3. 그 밖의 증명자료								
ა.	그 ㄲㅋ ㅎ ㅎ^ ;	<b>1</b> -	신 청 인	1	(	인)		
용인	시 장귀하							